

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허훈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5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허 훈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 
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  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 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 
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 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 
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 
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 
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 
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 
윤기섭, 윤종복, 이병도,  
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  
이소라, 이종배, 이종태,  
이종환, 이희원, 채수지,  
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45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의2를 추가하여 정당현수막을 규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법 제8조 제8호에서 정한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써 정함 (안 제11조의2 추가)

#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) ①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(이하 '정당현수막'이라 한다.)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.

1. 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,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한다.
2.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하여야 한다.
3.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·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.
4.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, 제3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, 시의원, 자치구청장, 구의원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.

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1조의2(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) ①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(이하 ‘정당 현수막’이라 한다.)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,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한다.</u></li> <li>2. <u>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계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</u></li> </ol>

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  
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하여야  
한다.

3.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  
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·  
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  
하여야 한다.

4.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 
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 
존중하되 형법 제309조, 제311  
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, 시의  
원, 자치구청장, 구의원의 실  
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  
욕하여서는 안된다.

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
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 
직접 제거할 수 있다.